



의안번호	제61호
회의 연월일	2025. 6. 2. (제565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 찰 청 (범죄예방대응국)
제출연월일	2025. 5. 20.

총포화약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그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 1) 법 제3조의2 개정으로, 기존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포함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2) 제6조의5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로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 제13조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를 전체 무기류(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간 모순되는 사항을 개정(안 제14조의2)

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안 제15조 제14호)

- 1) 법 제3조는 국민 누구나 화약류 허가 없이 야간 차량 사고·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이와 달리, 시행령은 수량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현행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삭제)

마.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1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의 제목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를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를 “제조소·판매소·임대업소 및 화약류 제조소·판매소·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를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총포소지자, 화약류 제조업자·판매업자·제조보안책임자·관리보안책임자 및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로 한다.

제6조의6의 제목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조의2제5항”을 “법 제3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포”를 각각 “총포 및 화약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포소지자”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총포류 회수”를 “총포류·화약류 회수”로, “총포류 처리방법”을 “총포류·화약류 처리방법”으로, “총포류 자진신고기간”을 “총포류·화약류 자진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총포”를 각각 “총포·화약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총포”를 “총포·화약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지허가”를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 저장소 점검계획

가.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나. 화약류의 도난·분실·불법유통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제6조의6제3항 중 “총포 안전관리를”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로,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총포”를 각각 “총포 및 화약류”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총포의”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으로 한다.

제15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스레트·기와 그밖의”를 “금속 또는 기와 등”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1호 중 “금속·스레트 또는 기와등”을 “금속 또는 기와 등”으

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중 “금속·스레트·기와등”을 “금속 또는 기와 등”으로, “천정속에”를 “천장 속에”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를 “제16조, 제17조, 제45조 및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로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를 “저장소설치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및 발파 작업일지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6의2의 제목 중 “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 (제70조제2항 관련)”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 (제70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비고 중 “총기소지”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5(<u>총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u>)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포 <u>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u> 등 점검계획 2. 총포 <u>제조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u> 3. (생략) 제6조의6(<u>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u>)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u>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u> 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u>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5(<u>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u>)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 1. --- <u>제조소 · 판매소 · 임대업소 및 화약류 제조소 · 판매소 · 저장소</u> ----- ----- 2. --- <u>제조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 총포소지자, 화약류 제조업자 · 판매업자 · 제조보안책임자 · 관리보안책임자 및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u> -----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6(<u>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u>) ① ----- ----- 법 제3조의2제6항----- <u>총포 및 화약류</u> ----- -----. ② <u>총포 및 화약류</u> ----- ----- -----.

1. 최근 <u>총포소지자</u> 현황	1. --- <u>총포소지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u> ---
2. 불법 <u>총포류 회수</u>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u>총포류 처리방법</u> 및 불법 <u>총포류 자진신고기간</u> 운영계획	2. --- <u>총포류·화약류 회수</u>----- <u>총포류·화약류 처리방법</u> ----- <u>총포류·화약류 자진신고기간</u> -----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u>총포</u> 제조업자 점검계획가. 무허가 <u>총포</u> 제조행위 나. (생략) 다. <u>총포</u>의 도난·분실·불법 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3. ----- -- <u>총포·화약류</u> ----- 가. ----- <u>총포·화약류</u> ----- ----- 나. (현행과 같음) 다. <u>총포·화약류</u>----- ----- -----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u>총포</u> 판매업자 점검계획가. 총포 <u>소지허가</u>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생략)	4. ----- -- <u>총포·화약류</u> ----- 가. -- <u>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u>----- 나. (현행과 같음)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u>화약류 저장소</u> 점검계획가. <u>화약류 무단 반출행위</u>

6. (생략)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나. 화약류의 도난·분실·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④ ----- 총포 및 화약류 -----

-----.

⑤ -----
----- 총포 및 화약류 -----

-----.

제14조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
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
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
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
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14. 자동차사고·고장등의 표시
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
용 불꽃신호기를 판매목적으
로 300개이하를 진열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업소·부품업
소·정비업소 등의 사업자 및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3개이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15. · 16. (생략)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 (생
략)

②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
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 총포·도
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
기·석공의-----
-----.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
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6. (현행과 같음)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다.

1. · 2. (생 략)

3. 지붕은 스레트·기와 그밖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8조(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
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운
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
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
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
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1. · 2. (현행과 같음)

3. ---- 금속 또는 기와 등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

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
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
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
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12.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진
흙 그 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
성이 없는 메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충격·정
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
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
게 할 것

13.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
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
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
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
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
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
상인 때에는 10발이하, 1.5미
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
과공수와 폭음수의 일치 여부
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 관리보안책
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
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사용자가 발파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
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
업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
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
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
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
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
게 할 것

6. 철관류·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
전작업중에는 정전기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
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
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건조시등 정전기가 발생
하기 쉬운 조건하에서 장전기
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오스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11. 도화선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
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
유폭약은 지체없이 화약류 저
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가스가 0.
5퍼센트이상인 되는 장소에서
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14. 장전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
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
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
터 초유폭약 또는 메지등을
제거하는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
준)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는 제
18조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
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
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

<삭 제>

를 지니거나 전등선·동력선
그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
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등으로 절연
된 전선 30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
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
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심선
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하는 때에는
전선·충전부 그 밖의 정전기
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
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구

명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다수의 전기뇌관을 일제히
발파하는 때에는 전압·전원
· 발파모선· 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
으로 하는 때에는 작업자외에
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
선에는 1암페어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
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낼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
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
터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제20조(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
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
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

<삭 제>

램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암층·암질, 사용하고자 하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굴 파기)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기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것

6. 갱안에서 폭약을 운반하는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갱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하는 때에 그 선의 절단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하는 때에는 발파시에 돌덩어리등이 갱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전에 암반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제21조(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①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삭 제>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 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
을 것

제22조(발파후의 조치) 발파를 끝
낸 때에는 그 작업자는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
발파에 있어서는 발파후 30분이
상을 경과하여 안전하다고 확인
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
근을 금하여야 한다.

제23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
량에 따라서 도로·건물·사
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

<삭 제>

<삭 제>

룩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 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둘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

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제24조(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삭 제>

나.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
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
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
로 폭발처리할 것

다.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
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
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
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라.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마.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
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
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
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
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
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

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
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
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
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
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
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
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
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
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6.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
호 · 제7호 및 제8호, 제18조제
1항제11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 ·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
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지붕은 금속·스레트 또는
기와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 16. (생략)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2
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
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
는 목재 등의 경량재를, 외부
는 금속·스레트·기와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 천정속에
철망을 칠 것

9. ~ 13. (생략)

② (생략)

제49조(적재방법) ①법 제26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적
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조 및 설비)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금속 또는 기와 등 --

12. ~ 16. (현행과 같음)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 금속 또는 기와 등-----
-----천장 속에

9.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
거나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
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탄·공
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
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
(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할 것

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
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
할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
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기계류·광석류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
건

라. 독물·극물·방사성물질
그밖의 유해성 물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은 동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
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게되는

경우의 차량의 적재량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13에 의한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 14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운반방법)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운반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는 별표 13에 의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 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야 하며,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

<삭 제>

을 것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
을 것. 다만, 제조업자·판매
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
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운
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
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는 위험하지 아니한 장
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
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
5미터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00미터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미터이상
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
니할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
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

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장치를 완
전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
류로 된 신을 신지 아니할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야간에 신지 아니할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
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테트
라센·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
분 또는 알코올분이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3퍼센트 정
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릿트 및 테트라
나이트렛트는 수분 또는 알코
올분이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질척질척한 상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이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화약류를 운반하는 통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맞는 통로로 운반하는 경우에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이 기준에 맞는 통로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할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아니할 것

3. 변화가 그밖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

4. 삭제

제51조(운반표지) ①화약류를 운
반하는 차량은 화약류의 운반중
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
센티미터이상의 붉은색 바탕
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쉬
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
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
다.

2. 야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이상
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의 앞뒤의 보기쉬운 곳에
달 것

②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붉은 색 등만
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

량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3.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4. 1만개이하의 총용뇌관

5. 1천개이하의 실탄·공포탄 또는 미진동파쇄기

6. 100미터이하의 도폭선

제52조(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삭 제>

①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함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운반책임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운반 그밖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

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5. (생략)
- ② 삭제
- ③ (생략)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법 제63조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 제17조, 제45조 및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화약류 <u>저장소설치자 및 화</u> <u>약류사용자</u>는 화약류 출납부 5. · 6.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저장소 설치자</u>----- ----- 5. · 6. (현행과 같음) 7.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 <u>출</u> <u>납부 및 발파 작업일지</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61